

수익자총회 일정

구분	세부내용	근거법률	날짜
신문광고일	- 기준일로부터 2 주 전에 신문(약관에 명시된 신문)에 광고	자본시장법 §189⑨ 상법 §354 준용	6/18
기준일			7/03
기준일 +1 영업일	- 판매회사가 예탁원에 수익자내역 통보 (판매회사 통보한 주소로 발송) ※ 판매회사의 통보가 늦어질 경우 늦춰질 수 있음		5 영업일 소요
기준일 +2 영업일 이후	- 자산운용회사는 예탁원으로부터 수익자명부수령		
소집통지서 발송일 전일	- 수익자 통지준비		
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	- 예탁원이 수익자에게 총회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(서면통지만 함) o 일반우편으로 발송	자본시장법 §190④ 시행령 §220① 상법 §363①준용	7/11 전후
서면의결권, 매수청구를 위한 반대의사 접수	- 서면의결권: 수익자는 총회일 전일까지 운용사에 접수 - 매수청구를 위한 반대의사 접수시한: 법적 시한은 총회일 전일 o 명부수익자는 운용사에 반대의사 표명 * 총회일 1 영업일전까지 운용회사가 접수하여 예탁원에 통보 o 실질수익자는 판매사에 반대의사 표명 * 명부수익자와 동일하게 운용회사에 접수가능	자본시장법 §190⑥ 자본시장법 §191	
수익자 총회일	- 예정시각에서 1시간 경과시까지 총회성립 요건 미달시 연기가능 * 의사정족수: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과반수 보유수익자 출석 * 의결정족수: 출석 수익자 의결권의 2/3이상과 발행된 수익 증권 총수의 1/3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	자본시장법 §190⑤⑦⑧	7/26
결과통보	- 예탁원에 수익자총회 결과통보 - 연기수익자 총회 개최시 해당 내용 통보 * 연기수익자총회: 최초 총회일로부터 2 주 이내 소집	자본시장법 시행령 §220②	
매수청구권 행사	- 자본시장법 §188②에 해당하는 신탁계약변경, 합병 안건만 매수청구권 부여 - 의안 가결시, 반대의사 통지한 수익자에 한해 매수청구신청 가능: 관련법상 매수청구종료일은 총회일로부터 20 일 o 명부수익자는 운용사에 매수청구 신청 o 실질수익자는 판매사에 반대의사 표명	자본시장법 §191	
매수청구 수익증권 매수	- 매수청구접수시한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약관상 환매주기에 따라 환매대금확정일과 지급일이 결정	시행령 §222	